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의 범위반 유발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 신설 〉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35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소년의 범위반 유발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7. 22.
3. 회 부 일 : 2025.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등 소상 공인을 역үүл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의 범위반 유발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 신설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 금지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등의 위반행위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3조(형의 감경) (생략) <신설>	제63조(형의 감경 또는 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30조제8호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및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형을 감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현행법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제58조제1호), 청소년유해약물(환각물질 등)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물건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제58조제3호),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제58조제4호) 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제58조제5호)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1),

- 1)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②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제59조제6호)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제59조제8호)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²⁾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업자 등이 청소년의 본인여부 및 나이를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범죄소년(14세~18세)의 「주민등록법」³⁾ 위반 검거 인원 현황 >

(단위 :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104	786	989	1,286	1,502

자료: 경찰청

-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2)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 3)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업자 등이 청소년의 본인여부 및 나이를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현행법상⁴⁾으로도 처벌되지 않거나 양형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어 감경될 수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를 명시할 경우 자칫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업자 등이 청소년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식품위생법」⁵⁾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4)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19. 6. 12.)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 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⁶⁾, 「청소년 보호법」에 형의 감경이나 면제 규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경찰조사나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또는 법원 선고 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검찰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음은 물론 행정처분(과징금)도 면제받게 되는 바, 이에 대한 개정 실익은 없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또는 폭행으로 인한 경우 고의가 없어 구성 요건 해당성

6) < 사업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24.3월)

- 과징금 면제사유 확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시행 전	시행 후
수사기관·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해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과징금 면제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우에도 과징금 면제

• 「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 행정처분 면제사유 확대(「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3항)

시행 전	시행 후
- 사업주의 나이 확인 의무만 규정 - 숙박업(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은 과징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나이 확인 협조 의무 근거 마련 -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숙박업주도 과징금 면제

이 없게 되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현행법상으로도 처벌되지 않거나 이러한 사용이 양형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정 사례 유형만을 형의 감경 사유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